

증권저축약관 신·구조문대비표

변경 전	변경 후	비고
<p>제3조 (세금우대증권저축의 가입)</p> <p>① 세금우대증권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.</p> <p>1. 만 60세 이상인 노인</p> <p>2.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</p> <p>3.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</p> <p>4.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</p> <p>5.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</p> <p>6.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</p> <p>7. 5.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.18민주화운동부상자</p> <p>② 세금우대증권저축은 2019. 12. 31. 까지 가입한 저축분에 대하여 적용하며, 기존계좌에서 세금우대증권저축으로 전환할 수 없다.</p> <p>③ 동일한 계좌에서 일부 금액만을 저축의 한도</p>	<p>제3조 (세금우대증권저축의 가입)</p> <p>① 세금우대증권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(직전 3개 과세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1회 이상 2천만원을 초과한 자를 제외한다)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.</p> <p>1. 만 65세 이상인 노인</p> <p>2.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</p> <p>3.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</p> <p>4.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</p> <p>5.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</p> <p>6.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</p> <p>7. 5.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.18민주화운동부상자</p> <p>② 세금우대증권저축은 2020. 12. 31. 까지 가입한 저축분에 대하여 적용하며, 기존계좌에서 세금우대증권저축으로 전환할 수 없다.</p> <p>③ 동일한 계좌에서 일부 금액만을 저축의 한도</p>	<p>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2 개정사항 반영</p> <p>소득요건 추가</p> <p>연령조건 변경</p> <p>가입기한 변경</p>

<p>로 지정하여 가입할 수 없다.</p> <p>④ 신규 저축가입 시 『비과세종합저축』으로 신청해야 하며, 통장이나 카드의 표지·내지 또는 거래내역서에 『비과세종합저축』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.</p>	<p>로 지정하여 가입할 수 없다.</p> <p>④ 신규 저축가입 시 『비과세종합저축』으로 신청해야 하며, 통장이나 카드의 표지·내지 또는 거래내역서에 『비과세종합저축』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.</p>	
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약관은 2020년 01월 02일부터 시행한다.</p>	부칙 추가